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17
------------	-------

발의연월일 : 2018. 7. 4.

발의자 : 황주홍 · 권칠승 · 이찬열
유성엽 · 김경진 · 천정배
조배숙 · 김중로 · 윤영일
임종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미등록 시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의 등록에 관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 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5조(과태료) ① · ② (생 약)</p> <p><u><신 설></u></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부과·징수 한다.</p>	<p>제3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p>